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인수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만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1. 피고는 20○○. ○○. ○. 계원 ○○명으로 조직된 계주인 소외 ◈◈◈로부터 계주의 지위를 양수하고, 원고가 수령할 계돈 금 ○○○만원의 계금채무를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인수하였습니다.
- 2.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인수금의 변제를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하였으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인수금 ○○○만원 및 이에 대한 위 계금채무의 변제기일의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지불각서

1. 갑 제2호증 채무인수약정서

1. 갑 제3호증의 1, 2 각 통고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00. 0. 0.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 관할법원 | ※ 아래(1)참조 | 소멸시효 | ○○년(□ 소멸시효일람표 ^^ |
|-------|---|------|-------------------------|
| 제출부수 |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 | |
| 비 용 | ·인지액: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 | |
| 불복절차 | ·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 | |
| 및 기 간 | •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 | |
| 기 타 |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임(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면책적 채무인수라 함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채무인수로 인하여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와 지위를 교체하여 새로이 당사자로서 채무관계에 들어서서 종래의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부담하고 동시에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면책되는 것임(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376 판결).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한하고,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임(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 | | |
| | 동시에 이루어진 소멸시효 중단사유, 즉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 부터 새로이 진행됨(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376 판결). | | |

※ (1) 관 할

-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 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